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. 4. 7 선고 2015가단657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3. 17.

판결 선고 2016. 4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대 16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5, 8, 7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㎡ 지상의 목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㎡ 지상의 블록조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송용

별지